

# 금강대학교 구성원 참여·소통 규정

제 정 : 2017. 12. 1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대학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 정의)**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‘구성원’은 교내 구성원인 총장, 교원, 직원, 학생을 말하고, ‘이해관계자’는 교외 인사인 재단관계자, 졸업생, 학부모, 지역사회 관계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며,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.

## 제2장 대학참여소통위원회

**제4조(대학참여소통위원회)** 구성원 간의 참여와 소통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참여소통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며,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.

③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 중에서 위촉하되 단위별 대표성이 있는 자로 수적 균형을 맞춰 총장이 선임한다.

④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되, 직원 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.

⑤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.

1.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에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
2.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
3. 학부나 행정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내 현안 사항
4.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
5. 위원장이나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회의 개최 시,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공지하며, 의결 사항 시행부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고 합의에 따른 활동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참여도를 제고한다.

### 제3장 위원회 운영

**제8조(범위)** 위원회는 구성원의 참여 및 소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학기별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감독한다.

- 1. 평의원회, 등록금심의위원회,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 법령상 위원회
- 2. 교무위원회 및 학사운영회의 등 대학운영 관련 각종 교내 위원회
- 3. 의견수렴 관련 교내외 각종 공청회, 설명회, 간담회, 정담회, 수련회
- 4. 대학 구성단위별 협의회
- 5. 교내외 각종 만족도 및 수요 조사 활동

**제9조(절차)** ① 교육 및 행정 단위에서 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적극 독려하고, 사업이나 제도 시행성과 평가 시 의견수렴 결과를 적용하여 환류하고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1. 시행 계획 수립
- 2. 해당 사업 관련 위원회 협의
- 3. 위원회 의결사항 시행
- 4. 시행결과 보고 및 문제점 분석
- 5. 시행결과 활용 및 개선점 보완
- 6. 후속 활동계획 반영, 환류

②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주무부서 관련 업무 처리절차에 따르되, 구성원 개개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무부서 해당업무에 개선의견을 반영토록 조치하고, 민원제기 구성원에게 해결방안이 내포된 개선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참여와 소통 활동을 통해 시행되는 정책이나 사업은, 시행계획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명기한다.

④ 교육 및 행정 단위는 구성원 참여·소통 활동과 관련하여 각 구성원 간 활동을 매 학기 1회 이상 시행한다.

**제10조(기타)** ①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